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13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서미화·강유정·이기헌

서영석・김 윤・김선민

홍기원 • 박홍배 • 조계원

김남근 · 소병훈 · 권칠승

전혀희 • 유종군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의 침투·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중앙 통합 방위협의회의 위원은 각 부의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 원장, 통합방위본부장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에서 오물풍선 등의 살포로 인한 생물데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염 위험성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방위에 있어서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법률 제 호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①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	2
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	
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	
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	
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	
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	
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	
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u>식품의약품안전처장</u> ,	<u>식품의약품안전처장,</u>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	질병관리청장
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이 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